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3
----------	------

2026년 3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2일
- 다. 상정일자: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

- 가. 제안이유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환경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임.
 -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 위탁기간: 3년('26.6.30. ~ '29.6.29.)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6.1.16.)
- 소요예산(안): 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등 자체 수익으로 운영)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주민 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위탁 사무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 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4) 시설 개요

- 시설명: 강남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9,716^m²
- 주요시설: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실, 풋살장 등
- 준공년월: 2001. 9.(개관일: 2002. 1.)
- 이용대상: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5)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확대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됨에 따라 시 재정 부담 완화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26.6.29.)에 따른 재위탁¹⁾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²⁾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검토

-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02년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³⁾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자원회수시설과-12. '26.1.2.).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실, 풋살장 등(지하1층/지상3층)

4)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강남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동 사무는 현 위탁 기간 종료('26년 6월)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1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⁵⁾이 수립되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정⁶⁾으로 심의하였으며, 관련 절차⁷⁾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2) 시설 운영 및 재정 구조

- 동 시설⁸⁾은 준공('02.1) 이후 1회차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사)흥사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총 7회차에 걸쳐 21년간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설 운영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민간위탁금)만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주민편의시설 운영 현황〉

구 분	양천주민편의시설	강남주민편의시설	마포주민편의시설	노원주민편의시설 (시립노원청소년센터)
수탁기관	(재)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사)흥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푸른나무청예단
위탁유형	수익창출형(자립형)			예산지원형
위탁기간	'25.7.1.~'28.6.30.	'23.6.30.~'26.6.29.	'25.12.30.~'28.12.29.	'25.1.1.~'27.12.31.
주관부서	자원회수시설과			청소년정책과

〈수탁자의 수입·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수 입	지 출	운영수지 차액	市 시설개선비 (민간위탁금)
2023년	2,374	2,177	197	720
2024년	2,599	2,470	129	551
2025년(추정)	2,440	2,450	-10	439

* 수입에 市 시설개선비(민간위탁금) 포함. 2025년 수치는 운영사 자체 결산 자료.

- 동 시설은 2회차부터 현재까지 1개 기관이 장기간 위탁 운영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 있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방안이 필요할 것임.

5) 강남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자원회수시설과-12. '26.1.2.).

6) 2026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회수시설과)(조직담당관-680, '26.1.16.).

7)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8) 연면적 9,716㎡(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골프연습실, 헬스장, 독서실 등으로 활용.

3) 시설 운영 현황

- 동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보완 요구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인·노인 이용 비중이 높고(78.5~83.2%) 청소년·어린이 이용 비중은 낮은(4.7~5.3%) 편임.

따라서 체계적인 유지보수, 중장기 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중·고령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이용자⁹⁾ 다변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강남주민편의시설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수입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년도	목표 인원	실적 인원	내국인						외국인
				노인	성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 이하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 인원	'23년	18,647	18,758 (100.6%)	5,294 (28.2%)	9,426 (50.3%)	3,028 (16.1%)	832 (4.4%)	173 (0.9%)	903	5 (0.03%)
	'24년	22,376	24,041 (107.4%)	6,539 (27.2%)	12,647 (52.6%)	3,600 (14.0%)	801 (3.3%)	439 (1.8%)	1,118	15 (0.06%)
	'25년 (9월기준)	23,495	18,476 (78.6%)	5,593 (30.3%)	9,766 (52.9%)	2,221 (12.0%)	489 (2.6%)	396 (2.1%)	1,040	11 (0.06%)
구분	년도	목표금액	실적금액	내국인						외국인
				노인	성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 이하	장애인	
프로그램 수입금	'23년	1,394	1,505 (108.0%)	340.1 (22.6%)	799.5 (53.1%)	265.7 (17.7%)	79 (5.2%)	20.4 (1.4%)	31.4	0.3 (0.02%)
	'24년	1,673	2,024 (121.0%)	441 (21.8%)	1,053.8 (52.1%)	299.2 (14.8%)	177.5 (8.8%)	51.5 (2.5%)	40.2	0.9 (0.04%)
	'25년 (9월기준)	1,756	1,349 (76.8%)	320.2 (23.7%)	717.7 (53.2%)	164.1 (12.2%)	113.8 (8.4%)	32.6 (2.4%)	36.8	0.6 (0.04%)

* 실적 인원 및 금액은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금액을 제외한 내국인+외국인 합계.

9) 노인: 65세 이상, 성인: 40~64세, 청년: 19~39세, 청소년: 9~18세, 어린이: 9세 미만

- 주민편익시설은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수탁자는 시설 운영 수익으로 운영하고,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민간위탁금)만 지원

※ 시설 운영 수익은 수강료 및 독서실 운영 수입 등임

- 최근 4년간 강남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천원)

연 도	수 입	지 출	운영수지 차액	시설개선비 (민간위탁금)
2022년	2,452,162	2,302,220	149,942	769,500
2023년	2,374,154	2,177,143	197,011	720,000
2024년	2,599,094	2,469,901	129,193	551,431
2025년 (추정)	2,439,667	2,449,732	-10,065	438,966

※ 수입금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개선비가, 2022년에는 코로나 손실보전금(351,000천원)이 포함됨.

※ 2025년 수치는 운영사 자체 결산 자료임.

- 최근 4년간 시설개선비(민간위탁금) 제외 순수운영실적

(단위: 천원)

연 도	수 입	지 출	운영수지 차액	비 고
2022년	1,682,662	1,532,720	149,942	
2023년	1,654,154	1,457,143	197,011	
2024년	2,047,663	1,918,470	129,193	
2025년 (추정)	2,000,701	2,010,766	-10,065	시설개선 공사로 프로그램 휴장에 따른 수익감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3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강남주민편익시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로 환경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임
- 나.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 나. 위탁기간 : 3년 ('26년 6월 30일 ~ '29년 6월 29일)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사무 내용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행정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의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 9,716 m^2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실, 풋살장 등
- 준공년월 : 2001. 9. (개관일 : 2002. 1.)
- 이용대상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사. 소요예산 : 운영비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자립형시설로 시설이용료 등 자체 수익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확대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됨에 따라 시 재정 부담 완화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6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680,'26.1.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강남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강수연 (☎2133-3679)